

청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8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88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20가소9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법률상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5. 12.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20가소9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는 2014. 11.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천안시 서북구 D 외 1필지 지상 공장 및 목분제조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11. 1.부터 2019. 10. 31.까지, 차임 월 1,342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C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이던 2016. 6. 9.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2016. 8. 30.까지 이 사건 공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C는 2016. 8. 10. 위 공장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0.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C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6. 8. 31.부터 2016. 9. 18.까지의 차임 상당액 792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9. 18.에야 위 공장에서 퇴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 C에 1,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C는 2017. 1. 10. 청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016. 8. 31.부터 같은 해 9. 18.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포함한 2016. 9.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0055호), 위 법원은 2018. 11. 29. 원고가 C에게 2016. 9.분 차임 1,432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청주지방법원 2018나11535호), 항소심 법원은 2019. 7. 25. 원고가 C에게 2016. 8. 31.부터 2016. 9. 18.까지의 차임 8,499,33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2016. 9. 19. 이후의 차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14. 확정되었다. C는 2019. 12.경 원고로부터 위 판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위 소송에서 2016. 8. 31.부터 2016. 9. 18.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피고를 통하여 C에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31.부터 2016. 9. 18.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한 데 따른 차임 상당액 792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C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임 상당액을 C에 전달하지 않고 부당이득함으로써 원고는 C에 위 차임 상당액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79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차임 792만 원을 C에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2) 설령 피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C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채권 13,558,691원을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분의 송달로 위 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

3. 판단

원고가 2016. 8. 31.부터 2016. 9. 18.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한 데 따른 차임 상당액 792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C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런데 이후 C가 원고를 상대로 위 차임 상당액을 포함한 2016. 9.분 차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C에게 위 19일간의 임대료 8,499,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C가 원고로부터 위 판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대표자인 당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6. 11. 1. 피고로부터 2016. 9.분 임대료로 1,3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 중에는 원고가 2016. 8. 31.부터 2019. 9. 18.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한 데 따른 차임 상당액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792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실제 피고가 2016. 11. 1. C에 1,3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E은 이 법정에서 피고로부터 위 792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원고로부터 2016. 8. 31.부터 2016. 9. 18.까지의 차임이 포함된 판결금을 지급받은 이유와 관련하여, C가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2019. 10.분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6. 8. 31.부터 2016. 9. 18.까지의 차임 792만 원을 C에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792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조희정, 판사 성찬용

1)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1. 3. 24. 원고 A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간회단4),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이후 2022. 1. 24.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어 A가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수계하였다.